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7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연장〉

-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94호)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94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연장	4

I.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211994호】

1. 발 의 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5.
3. 회부연월일 : 2025. 8. 6.

【의안번호 제2213194호】

1.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23.
3. 회부연월일 : 2025.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제2211994호】

현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펀드는 한국벤처투자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법 제70조제4항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령은 이를 30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벤처투자모태조합은 2035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자조합을 통하여 인공지능 등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조합과 자조합의 존속기간 역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면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모태조합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의안번호 제2213194호】

장기간·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딥테크 육성과 지방벤처 투자 등은 민간자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정책펀드인 모태펀드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모태펀드는 2005년 7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AI·딥테크 투자 확대, 연기금 등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비수도권 벤처투자 지원, 신생 및 소형 벤처캐피탈 지원, 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 등 다양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해 왔음. 특히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분야는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바, 모태펀드가 ‘인내자본’으로서 정책 기반 자금 공급의 중추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요구가 높음.

현행법은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어, 2005년 출

범한 모태펀드는 2035년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민간 출자자의 다양성과 자금 규모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태펀드의 조기종료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큼. 실제로 2024년 벤처펀드 결성액 중 모태펀드 출자금은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해 모태펀드 출자액은 1조 3,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8% 증가한 반면, 연기금·공제회 등 민간 부문 출자는 25% 감소하였음. 이는 모태펀드가 여전히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핵심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존속기간을 30년으로 명시한 모태펀드 규약을 조합원 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함(안 제70조제4항·6항).

Ⅲ. 검토의견

1.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연장

개정안은 현행 2035년까지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 또는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

현행	권칠승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 ③ (생략)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⑤ (생략) <u><신설></u>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30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년 내에 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모태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u>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년 결성된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¹⁾에 따라 30년이기 때문에 모태펀드는 2035년에 청산될 예정인데, 자펀드가 통상 8년~10년 운용²⁾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6년 결성된 만기 10년 자펀드는 존속기간 중 모펀드가 청산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개정안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지속적 발전과 모태조합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취지로 이해됨.

최근 벤처펀드 결성 실적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성 규모는 2021년 17조 8,481억원에서 2024년 10조 5,550억원으로 40.9% 줄었고, 결성 펀드 수는 2021년 1,198개에서 2024년 811개로 32.3% 감소하였음.

개정안에 따라 모태펀드를 2035년 이후까지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안정적 존속기간이 보장되면 모태조합 → 자조합 → 피투자기업 → 회수로 이어지는 전체 벤처투자 사이클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고 민간펀드 조성에 긍정적 신호를 전달하는 등 효과가 기대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②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2) 조기 청산이 가능하지만 평균 IPO 소요기간(2023년 기준 15.5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을 감안할 필요 있음.

2020~2024년 벤처펀드 결성 실적

(단위: 억원, 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결성금액	99,859	178,481	176,401	130,328	105,550	△19.0%
벤처투자조합	68,645	95,490	110,634	68,031	57,571	△15.4%
산기술사업투자조합	31,214	82,991	65,767	62,297	47,979	△23.0%
결성펀드 수	650	1,198	902	859	811	△5.6%
벤처투자조합	206	404	380	290	286	△1.4%
산기술사업투자조합	444	794	522	569	525	△7.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법안심사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먼저 권칠승의원안은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연장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절차가 부재하고 총 60년(기존 30년+연장 30년)의 존속기간 상한 이내라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행정부 자율적 판단만으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사전보고 등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장의 전체 상한(30년)을 두기보다는 정책 필요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정진욱의원안은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규약³⁾에서 정하도록 하고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 상한 및 연장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태펀드 영구화가 가능해지는데,

모태펀드는 지난 20년간 한국 벤처투자시장이 연간 11조원 수준으로 성장하고 초기·딥테크·지역균형 등 시장실패 우려가 큰 분야에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시장다변화와 혁신생태계 저변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⁴⁾와 함께,

최근 정책펀드의 민간투자 유인효과가 감소되었고, 장기간 정책자금이 대규모 자금공급자로 기능함에 따라 민간 앵커LP(핵심출자자)가 성장하지 못하고 운용사의 정부 의존성이 강해져 민간주도 생태계가 약화되었다는 의견⁵⁾도 있으므로, 이러한 역기능이 모태펀드 영구화에 따라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모태펀드가 영구화될 경우 무기한 존속하면서 기존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에버그린펀드(Evergreen Fund)⁶⁾

3)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제12조(모태조합 규약의 작성시 사전협의) ①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출자자와 협의하여 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2024.10.2.

5) 배승욱(2024)은 2014년 이전에는 모태출자가 1% 증가하면 민간출자가 0.845% 증가했으나, 2014년 이후에는 민간출자 증가분이 0.209-0.282%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함. 「모태펀드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24.3.

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에버그린펀드는 만기가 없는 대신 정기적(월 또는 분기)으로 기존 지분을 환매(Redemption)할 수 있는 유동성 창구(Liquidity Windows)를 가진 개방형 펀드인 반면, 모태펀드는 환매가 없는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영구화될 경우 정부출자금이 국고 회수 없이 무기한 잠기는(Perpetual Lock-up)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에버그린펀드 vs. 모태펀드

구분	에버그린펀드*	모태펀드
펀드 수명	◦ 무기한	◦ 30년(10년 단위 연장가능)
펀드 구조	◦ 개방형	◦ 폐쇄형
자본 회수	◦ 정기적 환매 가능	◦ 만기 시
성과 보고	◦ 수익률 및 NAV(매일) 정기 공시	◦ 모태조합 수익률 공시 없음

자료: Hamilton Lane, 「What Are Evergreen Funds?」, <https://www.hamiltonlane.com/en-us/education/private-markets-education/evergreen-funds> (2025.11.3. 접속)

6) 에버그린펀드(Evergreen Fund)는 정해진 만기 없이 무기한으로 운용(Perpetual Capital Structure)되는 개방형 사모펀드를 말하며, 투자자가 정기적으로 자금을 넣고 뺄 수 있는 특징을 가짐. 전통적인 폐쇄형 펀드가 통상 10-12년의 고정된 운용 기간을 갖는 것과 달리, 에버그린펀드는 영구적으로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자본을 유치하고 투자하는 구조임. Blackstone, Hamilton Lane, Carlyle 등 글로벌 투자회사가 운용중으로 운용액은 글로벌 사모시장의 5%인 약 7,0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짐.

“Evergreen funds typically offer lower investment minimums and regular liquidity opportunities — attributes that make them better suited for individual investors than the closed-end private market funds that serve the institutional market, which can lock up capital for a decade or more.”

“에버그린펀드는 낮은 투자 최소 금액과 정기적인 유동성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속성 때문에 에버그린펀드는 자본을 10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기관 투자자용 폐쇄형 사모펀드보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적합하다.”

—S&P Global, 2025. 4.25.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은 법률로 정하고(30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59